경기도의회 제365회
정 례 회

조 례 안 검 토 보 고 서

○ 경기도 교육재정 지원 및 협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김재균 의원 등 17명)

2022. 12. 7.(수)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원공식)

경기도 교육재정 지원 및 협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원공식

의안번호 208번 「경기도 교육재정 지원 및 협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2022. 11. 30. 김재균 의원 등 17명으로부터 제출되어 2022. 12. 2.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임.

Ⅰ. 개정이유

가. 현행 교육협력지원사업은 경기도가 경기도교육청에 교부하는 비법정전출금으로 경기도교육청이 주관하여 실시하고 있어 경기도의 책임감이 결여되고, 시군이 공동 참여하는 경우 예산 편성·집행방식이 서로 달라 경기도와 시군의 협력이 단절되는 문제점이 발생함. 이에 도와 시군이 협력하여 교육경비 보조사업을 실시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나. 또한 비법정전출금의 투명성 및 책임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도지사가 해당연도의 교육지원사업(교육협력사업 및 교육경비 보조사업) 추진실적 및 성과평가 결과를 보고할 때, 교육협력사업(비법정전출금)의 추진실적은 사업을 실제 집행한 경기도교육감이 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함.

Ⅱ. 주요내용

가. 제명을 「경기도 교육협력 및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로 변경함.

나. 정의 규정을 변경 및 신설함(안 제2조).

다. 교육경비 보조사업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안 제4조).

라. 예산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신설).

마. 시군, 교육지원청, 각급학교 등 관계자가 교육지원실무협의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10조제3항 신설).

바. 도지사가 상임위원회에 교육지원사업 추진실적 및 성과평가 결과 보고 시 교육협력사업에 관한 사항은 교육감이 보고하도록 함(안 제19조제2항).

Ⅲ. 절차 이행

가. 입법예고 및 집행부 협의 결과

○ 입법예고 : 의견 없음

○ 집행부 협의

- 평생교육국 교육협력과 : 의견 일부 반영

- 경기도교육청 학교급식협력과 : 의견 미반영

나. 비용추계

○ 비용추계 미첨부사유서 첨부

Ⅳ. 검토의견

1. 주요 내용 검토

가. 개정취지와 필요성

○ 경기도는 경기교육 활성화 및 교육환경 개선 등을 위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른 의무부담금 외 비법정전출금을 경기도교육청에 지원하고 있으며 경기도교육청은 교육협력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음.

○ 그러나 비법정전출금의 예산 편성 및 집행, 정산 보고 등의 과정에서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 간 실질적인 협의 조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상호 이해 부족으로 교육 관련 사업의 유사·중복 투자, 사업성과 관리 및 감독 부실 등의 문제들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 이에 경기도는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따라 각급학교의 교육경비를 보조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여 실제 교육 현장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고, 투명하고 적정한 예산 운용을 위하여 교육협력사업의 추진실적 및 성과평가 결과는 경기도교육감이 의회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것으로 개정취지와 필요성이 인정됨.

나. 개별 조문 검토

○ 현행 조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 제9항에 따른 비법정전출금만을 규정하였으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 제8항 및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따른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였으므로 본 조례의 **제명**을 「경기도 교육재정 지원 및 협력에 관한 조례」에서 「경기도 교육협력 및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됨.

○ **‘안 제2조’**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른 법정전출금

에 해당하는 정의 규정을 삭제하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 제9항의 비법정전출금 부분을 “교육협력사업”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 제8항의 교육경비 보조 부분을 “교육경비 보조사업”으로 구분하여 정의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는 없음.

정 의	근 거 법 률	예 산
교육협력사업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 제9항	비법정 전출금
교육경비 보조사업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 제8항	교육경비 보조금

○ **‘안 제10조제3항’**은 교육지원심의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구성하는 교육지원실무협의회에 시·군, 교육지원청, 각급학교 등의 관계자를 참석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으로, 교육지원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관계기관 실무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도와 시군이 협력하여 교육경비 보조사업을 실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 **‘안 제16조’**는 교육지원사업(교육협력사업, 교육경비 보조사업)의 지원금을 교부받은 자(교육청, 각급학교)가 사업종료 후 잔액을 반납하는 근거 규정임.

- 평생교육국 교육협력과는
‘행정안전부 유권해석에 따라 내부거래인 비법정전출금에 대한 정산·반납 제외 필요’라는 의견을 제시해 교육청으로 전출한 비법정전출금의 정산·반납 규정을 삭제해야 된다는 입장임.

- 평생교육국 교육협력과가 경기도 교육협력지원사업비 예산 편성과 관련하여 ‘비법정전출금으로 지원된 사업에 대해 정산과

잔액 반납 등을 요구 가능 여부’ 질의에 대하여 행정안전부 재정정책과는 ‘「지방재정법」등에 전출금에 대한 정산과 반납에 대한 규정이 없는 점을 미루어 전출금에 대한 정산과 반납을 요구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고 회신하였음.

- 그러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 제9항에 따른 비법정전출금은 법령에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한 시·도의 조례에 따른 자체적인 부담금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에 따라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으며,

- 또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 제5항은 ‘예산액과 결산액의 차액으로 인한 전출금(轉出金)의 차액은 늦어도 다음다음 회계연도의 예산에 계상하여 정산하여야 한다’고 교육비특별회계 법정전출금의 정산을 명문규정으로 두고 있는 바, 동법에서 비법정전출금에 관하여 정산 규정을 두지 아니한 것은 비법정전출금의 취지나 성격으로 보아 조례에 정산 규정을 둘 수 있다고 폭넓게 해석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사료됨.

- 2021년 교육협력지원사업 정산 결과 2022년 경기도교육청이 경기도로 반납한 비법정전출금 집행잔액은 약 26억 9271만원으로 만약 본 조례에서 비법정전출금의 정산·반납을 규정하지 않는다면 집행잔액은 교육청의 순세계잉여금으로 편성됨.
  ※ 2021년 경기도교육청 순세계잉여금 1,945억
  2020년 경기도교육청 순세계잉여금 2,451억

- 면밀한 세출 예측과 예산 집행 잔액의 최소화로 효율적이고 건전한 재정 운용이 되기 위하여 비법정전출금의 정산·반납 규정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됨.

○ **‘안 제19조제2항’**은 경기도지사가 의회 상임위원회에 교육지원사업 추진실적 및 성과평가 결과 보고 시, 교육협력사업(비법

정전출금)에 관한 사항은 경기도교육감이 보고하도록 하는 규정임.

- 의회 상임위에 교육지원사업의 추진실적과 성과평가 결과를 보고함으로써 사업 추진의 필요성, 적정성을 상세히 검토하고 의회 본연의 견제 · 감독 기능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임.

- 본 조항에 대하여 의회 입법정책담당관은,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94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르면 위원회는 의결로써 의장을 경유해 교육감의 출석요구할 수 있고, 그에 따라 교육감은 출석 · 답변해야 함이 명시된 바, 교육감이 해당 사업에 대한 추진실적과 성과평가 결과에 대해 직접 보고하는 것은 상위법에 저촉되지 아니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 경기도교육청 학교급식협력과에서는,
교육협력사업은 교육청의 소관 업무가 아니라는 점, 교육청은 그동안 교육협력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하여 경기도에 적극 협조한 점 등을 근거로 교육협력사업 추진실적을 교육감이 보고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의견을 제시함.

- 교육감이 소관 상임위에 출석해 교육협력사업의 추진실적으로 보고하는 본 조항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저해한다고 판단되지 않으며, 오히려 경기도가 도내 교육 · 학예 진흥을 위하여 교육청으로 전출한 비법정전출금을 사용하여 실시한 교육협력사업은 도지사보다는 실제 사업을 집행한 교육감이 보고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라 사료됨.

○ **‘안 부칙’**은 조례를 전부개정 하는 경우, 기존의 조례를 폐지하고 새로운 조례를 제정하는 것과 같으므로 부칙에 경과조치를 두어 종전 조례에 따른 행위의 효력을 유지할 필요가 있으므로 적절하다고 판단됨.

2. 종합 검토 의견

○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교육협력지원사업의 예산 집행 · 편성 및 관리 · 감독 부실 등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온 문제들을 개선하고자 해당 사업에 관한 추진실적 및 성과평가 결과를 교육감이 직접 보고토록 하고, 경기도가 교육경비보조금을 별도로 두어 직접 학교 현장에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만들려는 것으로 적절하다고 사료됨.

붙임 1 | **2023년 교육협력사업 기본계획**

□ 근 거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

○ 「경기도 교육재정 지원 및 협력에 관한 조례」

□ 추진방향

○ **도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사업 규모 등 적정화(선택과 집중)**

○ 교육의 공공성 강화로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

- 무상교복 지원 등 **수요자가 체감하는 생활밀착형** 사업 중점 추진

※ 무상 체육복 지원 사업의 조속한 시행을 위해 교육청 소관 조례 개정 등 조기 완료 필요

○ **도-도의회-교육청-시군-시군의회 협력사업의 성공적인 마무리**

- 학교 체육관 건립 지원(3차, 83교)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

○ **현장점검** 등 추진상황 상시 모니터링으로 **사업의 완성도 제고**

□ 그간 추진경위

○ 제29차 도-교육청 교육협력지원실무협의회 개최('22. 7. 27.)

- 2023년 교육협력사업 상호 제안(도 '22. 8. 12. / 교육청 '22. 9. 19.)
- 도-교육청 교육협력업무 실무자 협의(수시)

○ **제30차 도-교육청 교육협력지원실무협의회** 개최('22. 9. 28.)

- **2023년 교육협력사업 선정** 등 관련 도-교육청 실무자 협의(수시)

○ 2023년 도-교육청 교육협력사업(안) 교육청 안내('22. 10. 7.)

○ **경기도교육협력지원위원회 서면심의·의결**('22. 10. 26. ~ 10. 28.)

- **원안 가결**(찬성 13명, 반대 0명, 회피(도의원)* 2명) ※ 위원 명단(참고, 20쪽)

*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에 따른 도의원 소속 상임위 직무와 직접 관련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3. 1월 ~ 2024. 2월

○ **사업대상 : 도내 초·중·고·특수학교 1,829교**

○ **추진방법** : 교육청 특별회계 사업비 전출 후 **교육청 사업 주관**

○ **추진사업 : 3개 사업 97,295백만원** ※ 세부내용은 '사업별 설명서' 참고

사 업 명	사 업 량	기관별 부담액(백만원)			
		계	**도비**	시군비	교육청비
3개 사업		97,295 (100%)	**23,483 (24%)**	20,414 (21%)	53,399 (55%)
중·고교 신입생 교복 지원	1,246교 (272천명)	81,654 (100%)	**20,414 (25%)**	20,414 (25%)	40,827 (50%)
체험형 재난안전 교육 지원	500교	2,500 (100%)	**750 (30%)**	-	1,750 (70%)
학교 체육관 건립 지원(3차)	83교	13,141 (100%)	**2,319 (18%)**	-	10,822 (82%)

- 2023년 지원 중단 사업

사 업 명	'22년 도비 (백만원)	사 유
학교 건축물 석면 제거	2,000	교육청 자체사업으로 추진하기로 협의
통학로 교통안전지도	154	교육청 자체사업으로 추진하기로 협의
경기꿈의학교 운영	5,250	도 재정여건 고려, 교육청의 사업 재구조화 추진 예정이므로 성과 등에 따라 추후 검토
경기꿈의대학 운영	2,228	도 재정여건 고려, 교육청의 사업 재구조화 추진 예정이므로 성과 등에 따라 추후 검토
사립학교 공정채용 지원	550	교육청 자체 일몰

○ 추진일정

계획수립, 사업비 전출 (도)	⇨	사업운영 (교육청)	⇨	현장점검 (도, 교육청)	⇨	정산, 결과보고 (교육청)	⇨	정산검사, 성과평가 (도)
'23.1.		'23.1.~'24.2.		'23.1.~'24.2.		'24.3.		'24.3.~'24.5.

□ 교육협력실무협의회 운영

○ 운영기간 : 연중 수시(교육협력사업 관련 및 기관 간 협력 필요 안건 발생 시)

○ 위원구성 : 도 교육협력과장, 교육청 학교급식협력과장(공동위원장),
교육협력 담당 팀장, 예산편성 관련 팀장, 안건 관련 팀장 등

○ **주요내용 : '23년 사업 추진상황 점검, '24년 신규사업 발굴 협의 등**

□ 정산검사 및 성과평가

○ 평가기간 : 2024. 3. ~ 2024. 5.

○ 평가대상 : 2023년 교육협력사업

○ **평가위원 : 경기도교육협력지원위원회 위원 15명(위원장 : 도 행정1부지사)**

- 당연직(5) : 도 기획조정실장, 평생교육국장
교육청 기획조정실장, 교육협력국장, 행정국장
- 위촉직(9) : 도의원 2명, 교육재정 전문가 1명, 학부모 2명, 교수 등 4명

○ **평가내용** : 2023년 교육협력사업 **정산검사 및 사업별 성과평가**

○ **사전준비(기관별 추진사항)**

〈교육청〉 1차 정산검사 및 평가 (2024. 3월말, 도 제출)

- 대상(방법) : 교육지원청 및 각급 학교 추진 사업 (사업부서 ⇒ 교육청 제출)
- 내용 : 사업별 목표 달성 및 집행 적정 여부, 사업별 자체 평가

〈 도 〉 2차 정산검사 및 평가 등 (2024. 4~5월)

- 대상(방법) : 교육청 1차 정산검사 및 평가 자료 확인**(필요시 보완 요구)**
- **위원회 평가준비** : 사업계획 및 관리, 성과 등을 중심으로 평가지표 마련 후
경기도교육협력지원위원회 심의(별도계획 수립)

○ **성과평가 결과 보고 : 2024. 5월, 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 기대효과

○ 도-교육청-시군의 유기적 협력을 통한 경기도 교육 활성화

○ 교육환경 개선을 통한 공교육 내실화 및 창의인재 양성 기반 구축

붙임 2 사전 입법영향 분석지표

입법영향 분석항목	세부항목	입법영향분석척도
1. 입법의 필요성	상위법령에서 위임된 사항이거나 자치사무에 해당하는가?	① 그렇다 ② 그렇지않다
	공익 및 정책실현에 필요한 조례인가?	① 그렇다 ② 그렇지않다
	조례로 규정해야 할 사항인가? (규칙으로 정하거나 국가에서 법령으로 정해야 할 사항은 아닌가?)	① 그렇다 ② 그렇지않다
2. 적법성/중복성	입안내용이 헌법 및 상위법령에 부합하는가?	① 그렇다 ② 그렇지않다
	중복되는 법령 및 다른 자치법규가 있는가?	① 그렇다 ② 그렇지않다
	중복되는 법령이나 자치법규가 있음에도 별도로 제정할 필요가 있는가?	① 그렇다 ② 그렇지않다 ③ 해당없음
3. 비용/의견수렴	비용이 많이 수반되어 재정건전성을 해칠 소지는 없는가?	① 그렇다 ② 그렇지않다
	비용추계는 이루어졌는가?	① 그렇다 ② 그렇지않다
	조례제정시 입법예고, 공청회 등 의견수렴을 거쳤는가?	① 그렇다 ② 그렇지않다
	조례시행에 따른 이해당사자의 의견 및 반대의견을 충분히 검토하였는가?	① 그렇다 ② 그렇지않다